

제 7차 5개년 계획과 사회복지서비스

김 영 모*

- I. 서론
- II.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III.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IV. 결론

I.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계획은 1960년대 초까지 만연되어 있었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경제개발 계획은 주로 공업화에 의하여 조국을 균대화시키려고 하였다. 공업화와 균대화론은 기능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회발전이론이다. 그러한 결과 농촌해체, 가족해체, 빈부격차, 영세민족의 형성등 많은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 수재, 전란 및 외원등에 의한 재민구호, 시설보호등과 같은 구호사업으로는 이에 대처하기 어려워, 1960년대 초에는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퇴직금)등이 제정되었고 점차 자주적인 사회복지사업이 발달하였다.

그후, 6차의 5개년 계획이 성공함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와 철실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보험, 연금보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비록 경제제일주의 및 선선장 후분배의 경제개발계획이 6차례나 이루어졌지만 해가 갈수록 사회복지서비스, 생활보호 및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복지가 발달하여 왔던 것이다.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러한 경제개발계획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특히 제 7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과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경우가 어떠한가를 검토하고 그 과제가 무엇인가를 고찰하여 보려고 한다.

II.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6차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은 경제체일주의의 논리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 최근 제 6차 5개년 계획(1987-1991)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기본방향은 ① 우리의 경제사회발전 수준에 알맞는 복지시책이어야 하고 ② 가족 및 지역 사회의 복지기능을 최대한 조장하며 ③ 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시책을 전개하고 ④ 민간의 복지지원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은 선성장 후분배, 선가족보호 후사회보장 및 자조사업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정되어 왔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사회복지정책이 국가정책의 2차적 관심이고 가족의 복지 기능이 수행되지 못할 때 국가가 사회보장을 실시하며 가능한 한 가족과 지역사회 및 직장이 스스로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자조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업화에 의한 선성장정책은 국민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기존의 가족 및 부락중심의 자조사업도 파괴되었으며, 도시화 및 공업화의 결과는 상조회, 공제회 및 교회중심의 자조사업이 과거 혈연 및 치연중심의 자조사업을 대체하고 있다. 이와 같이 6차의 계획은 사적 복지에 의존하면서 국가개입에 의한 공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약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방향은 현대국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건설과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여건은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6차 계획기간에 실시되었던 지역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 모자복지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시작될 제 7차 5개년 계획의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은 제 6차 계획의 경우와 같이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경우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제7차 5개년계획안의 기본방향을 여기에서 보기로 한다.

첫째,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형평증진을 위해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조세, 물가, 고용정책 등 소득분배 관련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둘째,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보호수준의 향상 및 복지 수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충급여제도를 실시한다.

셋째, 사회보장재정의 안정을 도모하여 보험료부담과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간의 정책범위를 조정하여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넷째, 지자체 실시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복지기능분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고 지방복지행정조직의 확대·개편을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배치와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다섯째, 사회보장제도간의 연계를 유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여섯째, 가족복지기능의 강화로 핵가족 추세에 따른 제반문제를 예방하고 가족복지기능을 회복하도록 조장한다.

이러한 것을 보면, 제 7차 5개년 계획기간에 있어서 기존의 복지제도(프로그램)를 확충하고 그 효율성을 기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는 복지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이 사회보장부문의 기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한 새로운 방향은 ① 성장과 복지의 개념을 균형적인 것으로 보고 ② 지방단체와의 복지기능을 조정하며 ③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와 복지사무소의 설치 ④ 고용보험 및 농어민연금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 비하여 매우 발전된 것이다.

그러면, 제 7차 5개년 계획안에 나타난 사회보장의 프로그램별 전략 방향이 어떠한가를 보기로 하자.

가. 사회보험분야

- 1) 국민연금제도의 농어민 확대
- 2) 의료보험재정의 안정화
- 3)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기반 조성
-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확대
- 5) 사회보험제도간 연계운영 및 관리효율성의 제고

나. 사회부조 분야

- 1) 생활보호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 2) 생활보호사업의 보호수준 개선
- 3)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
- 4) 생활보호행정체계의 확립

다. 사회복지사업 분야

- 1)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서비스의 확충
- 2)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
- 3) 사후치료적 서비스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의 강화
- 4) 복지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서비스 제고
- 5) 가족부양기능의 강화
- 6) 기업 등 민간의 복지참여 유도

이러한 방향정립 이외에도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방향은 앞에서 지적한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고 다만 기존 프로그램의 부분적 개선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앞에서 지적한 전략 내용을 분야별로 검토하여 보자.

첫째,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농어민 연금을 실시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며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필자가 볼 때는 이것 이외에도 고용보험을 실시하여야 되고 도시자영인연금도 실시하여야 된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낭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분립되어 있는 제도및 프로그램을 통합시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회보장청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국민(직장)연금을 정상화시키고 고용보험을 시작하기 위하여서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부조에 있어서는 생활보호사업, 특히 생계보호사업의 방향이 비교적 잘 제시되고 있으나 교육보호, 주택보호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의료보호의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금전급여 뿐만 아니라 비급전(물질)급여 서비스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의료보호제도는 의료보험에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는 기본방향이 잘 정립되어 있으나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여기에 적용되기 어려운 것 같으며 나머지의 경우 이것이 사회복지사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특히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특성 중의 하나가 단순수용의 시설보호사업인데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불필요하고 이것의 기능을 다원화시키고 또 (재활, 요양원, 전문서비스 등) 지역사회복지센타로서 기능하도록 해야한다.

넷째,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이 매우 긴요한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제 7차 계획안에 의하면 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배치 ② 시·군·구 단위에 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③ 사회복지직업의 설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된 것 같다.

III.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복지 6법에 기초하여 있다. 복지 6법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 법(제2조)을 보면, 보호, 선도 또는 복지를 목적으로 한 복지 5법이외에 11개의 사업(사회복지상담, 재해구호, 부랑인선도, 직업보도, 인보복지,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모자복지, 의료보호, 사회복지관운영, 완치자 사회복귀 등)을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이 생활보호사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핵심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 아직도 그 대상이 많이 있으나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요보호자는 매우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은 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관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② 시설수용보호사업이 중심이고 치료적인 성격을 지니며 ③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은 노동능력이 없거나 무의무탁한 요보호자이다.

이러한 대상과 보호방법 이외에 일반 가정의 아동, 노인, 장애자, 부녀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 시설보호 (임시보호, 통원치료 등)를 받고 거택보호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하

겠지만 그것은 현행의 법령(대책)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이 일반인을 위한 예방사업 및 전문적 서비스를 수행하려면 사회복지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사회복지센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된다. 그러한 경우 정부지원사업 이외에도 지역 사회복지자원을 이용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영국의 사회봉사처럼 최저의 사회적 욕구가 결핍된 요보호자에 대한 법적 대책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이 발전되어야 하고 그보다도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그것이 예방, 재활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복지사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제 7차 5개년 계획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기본방향 6가지는 매우 바람직하고 잘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간다. 왜냐하면 기존의 복지제도와 시설장이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변화(사업)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마련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야별 예산

	86	87	88	89	90	96	백(만원)
노인복지	6.5	7.8	8.8	10.5	33.3	310,415	
아동복지	26.7	24.5	27.3	24.4	27.7	212,486	
부녀복지	12.1	10.9	8.5	7.8	5.2		
장애인복지	34.0	35.6	39.2	44.4	26.0	132,875	
부랑인복지	13.9	13.1	11.6	9.7	6.1	21,036	
사회복지행정 등	6.9	8.1	4.7	3.3	1.8	53,170	

* 비 고 : 1960년의 예산은 실액임.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자되는 정부예산이 지금까지 일반회계의 약 0.3%에 불과하였다. ('90년의 경우 0.5%) 1991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1,460억원(국고)이지만 제 7차계획기간 중에 노령수당, 영육아보육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96년에는 현수준의 3배 이상으로 확대시키려고 한다.

제 7차 5개년 계획기간에 투자되는 예산은 과거에 비하여 그 구성비는 큰 차이가 없으나 예산액은 확대되고 새로운 사업이 분야별로 많이 책정되고 있다. 예컨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가정복지서비스, 가정위탁사업, 영육아보육사업, 모자복지사업 등이다. 그밖에도 복지사무소 설립,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과거 시설보호중심에 가정보호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이었다. 아동복지사업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무의무탁한 요보호아동이고 이들은 주로 시설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설아동이 아직도 278개소에 23,450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쟁고아를 수용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이 끝난 지 18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수용시설과 아동이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정책발상을 하여야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오늘날 시설아동은 주로 기아, 가출아인데 이들이 예방된다면 현행 아동복지사업의 낭비적이고 비전문적인 사업은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방사업이 아동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방사업으로서 정부는 그간 51개의 아동상담소(3개는 공립임)와 28개의 일시보호소를 설립하였고 영육아보육사업의 기반조성(소위 일원화)을 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국가보호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하였다고 하지만 주로 기존의 치료사업인 시설보호사업의 지원과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면, 제 7차 계획의 추진계획을 보자.

1) 영·유아보육사업의 확충

- ① 보육시설의 확대설치(정부지원 보육시설이 4,250개소, 민간 및 가정보육 시설이 32,210개소)
- ② 보육시설의 운영내실화(우수한 보육교사, 보육프로그램, 교재, 장학 지도)

2) 아동상담 기능의 확충

- ① 아동상담소의 확대설치 및 운영지원(시·군·구에 1개 공립아동상담소설치)
 - ② 아동상담체계의 확립(아동위원 -> 아동복지지원 -> 아동상담소)
 - ③ 전문아동상담 요원의 확보, 쳐우개선 (현재 8급 -> 7급상향)
 - ④ 어린이 찾아주기 사업의 활성화(연고자찾아주기 센터운영)
- 3) 불우아동지원 서비스의 강화
- ① 결연사업의 지속적 추진
 - ② 아동복지시설의 생활환경개선과 보호수준 향상(전문인력, 생활비 향상, 시설증·개축, 시설 보강)
 - ③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생활지원(직장알선, 15개소 자립시설 건립)
 - ④ 가정보호제도의 확립(국내입양사업, 가정위탁사업)
- 4) 아동의 건전육성 조장
- ① 아동시설의 확충 및 위해환경제거(아동전용시설)
 - ②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예방적 서비스제공(가족교육, 가족치료 기관)

이러한 계획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동상담소와 영유아보육사업의 확충이다. 전자의 경우 시·군·구에 1개의 아동상담소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좋은데 기존의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현존의 아동상담소는 공립의 경우, 아동복지과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사립의 경우, 해외입양아동의 수집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동상담소는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문제아동의 상담, 갈별, 조치 등의 전문적 서비스기능 즉 아동복지전달체계의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70년대까지의 탁아사업과 80년대의 육아교육사업의 혼혈 아직 성격을 지닌 것이지만 오히려 교육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현재의 일원화 성격은 보호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기능이 전도된 감이 있다. 따라서 영세민과 맞벌이 부부의 탁아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종래처럼 유료유치원화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밖에도 시설아동의 자립생활지원사업이나 가족기능강화의 예방적 서비스 사업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전자는 노동부의 직업훈련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고 후자는 민간(단체)의 기능이

되어야 할 것 같다.

2. 노인복지사업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65세이상 노인은 90년 현재 전체 노인의 5.0%임) 그리고 현재 99개의 노인복지시설에 약 7천명의 노인이 수용보호되고 있다. 최근 노인복지사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노인복지 예산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되어가고, (노인요양시설 등) 특히 재가노인을 위한 각종의 프로그램(예. 노인우대제, 노인소득보장, 가정봉사센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개발되어 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 7차 계획의 추진계획을 보기로 하자.

- 1) 경로효친사상의 양양(노인부양 수당제 등)
- 2)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확립(25% 노인에 노령수당 확대, 시·군·구에 노인능력 은행, 노인공동작업장, 노인고용촉진, 청년연장 등)
- 3) 노인건강진단(노인성질환 예방교육, 노인진료실, 노인요양시설 종설, 가정간호제, 가정봉사원제 등)
- 4) 여가 및 사회활동의 조장(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캠프 등)
- 5) 주거대책의 강화(3세대 가족형 주택 등)
- 6) 시설보호수준의 향상 및 시설의 다양화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 7차 계획은 제 6차 계획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노인사업의 전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고 시설수용보호사업보다도 재가서비스와 여가활동서비스 및 고용서비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간 부진한 유료양로원과 노인요양시설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주로 도시노인을 위한 것이고 농촌노인의 구성비가 도시노인에 비하여 거의 두배(9%)이상이 되는데 비하면 농촌노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복지

우리나라 장애인의 추정인구는 전체의 2.2% - 4%이다. 선진국가의 경

우는 약 10%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율이다. '90년말 장애인 등록사업의 결과, 248,447명이 등록하였다. 이들 중에 지체장애인 62.5%이고, 정신지체장애인인 15.7%, 언어·청각장애인인 14.3%, 그리고 시각장애인인 7.3%이다.

이들의 장애발생원인이 임신시 바이러스감염, 출생시 뇌손상 등에 의한 것이 42.1%가 되며 나머지는 출산후 질병, 외상, 사고 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선진국가의 경우에 비하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비하여 출생전후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예방이 장애인복지의 1차적 과제인 것이다.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은 '90년말 159개소이고 이 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는 장애인이 14,000여명이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모두 102개이고 학생수는 19,947명이다.

그러면, 제 7차 계획의 추진계획을 보자.

- 1) 장애발생의 예방사업 강화(모자보건사업)
- 2) 재가장애인의 봉사사업 확충(재가복지서비스)
- 3) 장애인 교육기회의 확대(장애인 차녀의 장학지원)
- 4) 보장구 산업의 육성(보장구개발센타, 보장구연구소)
- 5) 장애인 의료비의 지원(증증장애인의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6) 특수학교의 설치(20여만명 특수교육 진흥계획)
- 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확대와 전문직서비스의 확보(430개 시설증설)
- 8) 취업의 보장
- 9) 사회적 인식개선 및 생활환경의 조성

이러한 계획을 보면 장애인 시설보호사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의 예방 및 재활, 재가서비스를 강화시키겠다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 시설운영지원 등이 전체 예산의 82%를 차지하였고 재가장애인복지비는 불과 18%였기 때문에 7차 계획도 시설보호사업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원재활 및 재가서비스를 위한 방향전환이 과감히 요구된다.

4. 사회복지전달체계

정부는 7차 계획 중에 전문적이고 책임이 있는 복지행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①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6대 도시 지역) 중앙에 사회복지청을 설치하며 ②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고 ③ 사회복지직을 행정직렬에 설치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획기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비록 기존의 정책(자원)이 잘못 시작되었을지라도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활용문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현재의 기능, 즉 생활보호사업 이외에 적어도 사회복지서비스(복지 5법)의 기능이 부여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보험업무와 민간시민운동 등(예,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지도업무를 추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V. 결론

지난 6차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경제성장 위주로 마련되어 실시되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도 요보호자(주로 무의무탁자)에 대한 시설보호사업이 주로 60-70년대에 발달하였고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이 주로 70-80년대에 발달하였으며 일반 국민에 대한 사회보험 및 재가 보호사업이 주로 80년대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변화되고 또 그 내용도 변화되고 있다.

과거의 경제개발계획이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기본방향도 선가족보호 후사회보장, 시설수용 보호사업이 그 핵심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특히 사회적 욕구의 변화는 사회개발,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 재정증립,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무색하게 되었다. 예컨대 지역의료보험과 생활보호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자되는 보건사회부의 예산이 과거에 비하여 2배나 증액되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90년에 6.6%인 14,874억원).

이와 같이 국민의 복지욕구는 변화·발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증대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7차계획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설보호에서 재

가보호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특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치료사업에서 예방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7차·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충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및 정책의 개발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국가정책화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법인)의 자선 또는 박애사업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이것이 국가사업의 민간법인에의 위탁업무라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전환은 최근의 사회복지시설과 수용자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서 나타났지만 아직도 대단히 미흡하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이 생계비에 미달하고(약 75%)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국공립시설에 비하여 66%에 불과하며 다른 유사기관(특수학교 등)에 비하여 그 절반에도 미달하고 있다. 이것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노동조건이 16시간 이상 근무자가 전체의 6할이상이 되고 또 남들이 꺼리는 고된 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